

2022년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종합재가센터 「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개요

채용직위	채용인원	고용형태	근무지	비고
사원	1명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제주시 애조로1254, 1층)	

※ 추후 센터상황 및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함(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공통 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 ■ 거 주 지 :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2022. 6. 27.)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응시자 유의사항 8-하.결격사유 참고)
사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가산점)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각 과목 만점의 5%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		동점자 우선 채용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인성검사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직무내용

구분	직무내용
사원	■ 종합재가센터 운영 관련 사무 ■ 방문요양 서비스 접수 및 상담, 계약, 이용료 청구 등 ■ 기타 센터 운영 지침에서 정한 업무(긴급돌봄지원사업 등) 등

4. 채용전형 일정 및 기준

가. 채용전형 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채용공고	' 22. 5. 31. (화) ~ 6. 10. (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
지원서접수	' 22. 5. 31. (월) ~ 6. 10. (금) 18:00까지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6. 14. (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인·적성검사	' 22. 6. 16. (목)	
인·적성검사 합격자발표	' 22. 6. 17. (금)	
면접전형	' 22. 6. 20. (월)	
최종 합격자 발표	' 22. 6. 21. (화)	
임용 후보원서 등록	' 22. 6. 22. (수) ~ 23. (목)	
임용예정일	' 22. 6. 27. (월)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안내 예정

나.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단계	평가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서류전형	■ (적/부)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입사지원서 성실 작성 여부	요건충족자
인·적성 검사	■ 인성검사 신뢰도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정신건강 점수가 4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인·적성 평균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부정적 성향, 반사회성, 집단화 성향의 점수가 각 60점 이하인 자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까지로 하며, 나머지는 절사) ※ 채용직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5배수 미만인 경우 해당 직위에 한해 인성 및 적성검사 결과 위 기준점수 이상인 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전형단계	평가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면접전형	〈평가항목 배점기준〉 <table><tr><td>①공적 채무성 등</td><td>②이해력 · 지식수준</td><td>③의사발 표정확성 · 논리성</td><td>④인성 및 직업관</td><td>⑤창의성 및 전문성</td><td>배 점</td></tr><tr><td>20</td><td>20</td><td>20</td><td>20</td><td>20</td><td>100</td></tr></table> ■ 5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면접 평가 ■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면접 시험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필기 시험(적성검사) 성적 순	①공적 채무성 등	②이해력 · 지식수준	③의사발 표정확성 ·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배 점	20	20	20	20	20	100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이내 선발
	①공적 채무성 등	②이해력 · 지식수준	③의사발 표정확성 ·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배 점								
20	20	20	20	20	100									
공통기준	※ 적성검사 및 면접전형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은 전형별 과락을 통과한 자에 한해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선발 및 결정	■ 최종 합격이후 제출서류 검토 후 관계법령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1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자가 없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5배수 이내 (차순위 득점자 순)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제출 서류 (필수)	응시원서	[별지1]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별지2]서식에 의거 제출
	경력기술서	[별지3]서식에 의거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4]서식에 의거 제출
	주민등록 초본	공고일 이후발행, 주소변동 기재, 병역사항 포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필수

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재직/경력증명서	해당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최종 합격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3자리 모두표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 반명함 사진 1부(3*4cm)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사 결과로 일반채용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합격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5. 31. (화) ~ 2022. 6. 10. (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jejupass@jeju.pass.or.kr)
- 접 수 처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함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7. 보수 및 근무조건

채용직위	보수	부가급여
사원	연봉제 (26,411,880원)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직책 또는 직급수당 별도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사회서비스원·제주도청 홈페이지등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채용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차.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카.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타.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돌봄서비스지원팀(064-742-35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구분	결격사유	비고
종합재가센터	재단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 붙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